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야구대회

경기규정 및 진행규정

1.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 개시 3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 3부를 기록실에 제출하고 경기에 사용할 배트를 검수 받아야 한다.
2. 경기 시작 전 양 팀 선수단 도열 및 인사는 생략하고 감독과 심판의 홈플레이트 미팅 후 진행한다.
3. 공수교대 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공격과 수비의 플레이볼은 60초 이내에 해야 한다.
4. 경기 중에 타임 요청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하여 총 3회로 한다.
5. 감독의 마운드 방문 제한 시간은 30초로 하며, 덕아웃 복귀 시에는 반드시 속보로 이동한다.
6.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경기당 총 2회로 하며, 허용 횟수 이후 포수의 마운드 방문은 팀의 타임 요청 1회로 적용한다.
7.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이 투수 마운드에 갈 수 있다.
8. 덕아웃, 벤치 밖에는 일체의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9. 타자는 타격 중 불필요한 행위로 타석을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10.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때 심판은 불응할 수 있다.
11. 경기 진행 중 또는 중단 시에 베이스코치가 코치박스를 벗어났을 경우 경기 재개시 속보로 코치박스로 복귀한다.
12.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코치·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베이스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13.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는 덕아웃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14.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판정한다.
15.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경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 보크로 판정한다.
16.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2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4구로 한다.
17.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에게 빈 글러브로 태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퇴장 조치한다.
18.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 포수에게 경고를 선언한다. 두 번째부터 행위를 한 포수는 바로 퇴장 조치한다.
19. 덕아웃 내의 선수는 상대팀에 야유행위나, 욕설, 선수로서 어긋난 행동을 금지하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20. 경기 중 선수 교체 및 어필은 오직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공식 야구규칙에 명시된 어필 사항 이외의 어필을 하는 감독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21. 각 팀은 총 2회의 4심 합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4심 합의 후의 판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판정의 불복이나 어필을 계속할 경우 바로 퇴장 조치한다. 4심 합의 판정 대상에서 스트라이크/불
판정은 제외한다.
22. 현장 부정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시, 상대 팀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본 협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23. 신원확인인 팀 감독만 주심이나 운영진에게 요청할 수 있다.
24. 장시간 어필 및 항의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경기를 몰수 처리할 수 있다.
* 어필 시간도 경기의 일부이며, 강우 및 운영목적에 따라 지연된 시간은 차감 한다.
25.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위원 및 심판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해자 소속 팀은
해당 경기 몰수처리 되며, 가해자는 차후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26. 대회 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27.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에는 퇴장 조치한다.
28. 배트는 동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목적 및 무분별한 오용을 막기 위해 기준 값
이상으로 제작·공인한 배트만 사용 가능
*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공인배트(비목재) 리스트(참고)
29.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규정을 준용하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